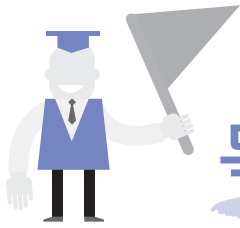




2015년도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시험요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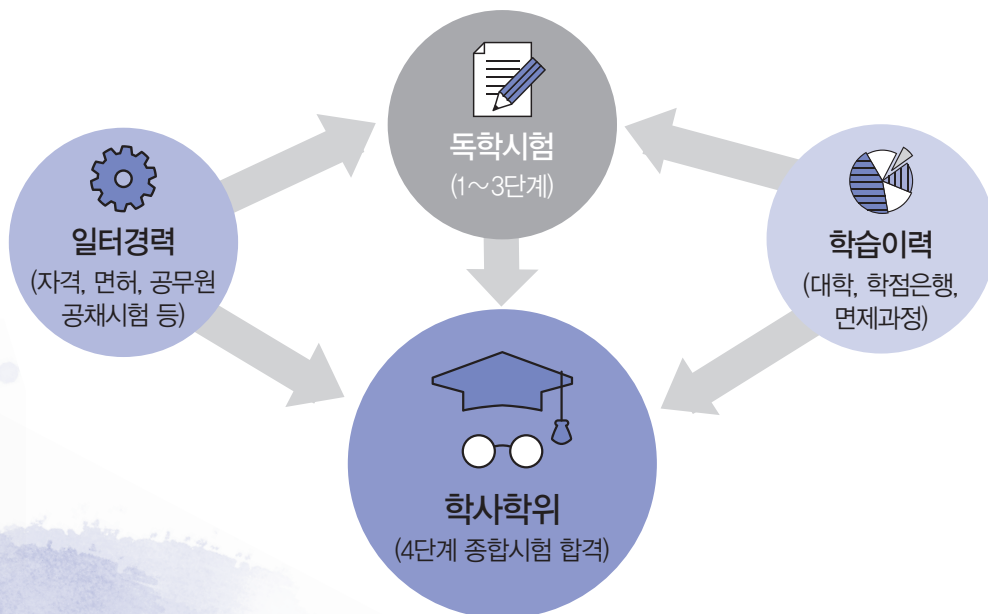


독학학위제는 ...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독학자(獨學者)에게 대학졸업자격을 인정하는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대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평생학습시대의 자아실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 4단계 과정시험(교양, 전공기초, 전공심화, 종합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아실현과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개인의 삶에서 취득한 다양한 자격과 학습이력을 심사하여 1~3단계의 일부 과정 또는 과목 시험이 면제 가능합니다. 4단계인 학위취득종합시험은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CONTENTS

I. 시험 요강	4
1. 전공분야	4
2. 단계별 시험	4
3. 응시자격	5
4. 시험 일정	7
5.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8
6.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9
7. 단계별 시험과목(과목코드) 및 시험시간표	12
8. 수험생 유의 사항	16
II. 과정·과목 면제	18
III. 출제 및 성적 평정	19
1. 출제 방향	19
2. 문항 수 및 배점	20
3. 합격 사정	20
4. 성적 평정	20
5. 합격자 발표	21
IV. 기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22
V. 참고자료	23
1. 별표 1~6	24
2. 독학 이모저모	33

I 시험 요강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함) 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다.

[관계 법령]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7 타법개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1. 전공분야

- 국어국문학
- 영어영문학
- 심 리 학
- 경 영 학
- 법 학
- 행 정 학
- 유아교육학¹⁾
- 가 정 학
- 컴퓨터과학
- 정보통신학²⁾
- 간 호 학³⁾

2. 단계별 시험

- 교양과정인정시험(1단계) : 대학의 교양과정을 이수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력 수준을 평가한다.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단계) : 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단계) :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 : 시험의 최종단계로서 학위를 취득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 유아교육학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단계)과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만 지원 가능

2) 정보통신학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단계)과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만 지원 가능

3) 간호학 :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에만 지원 가능

3. 응시자격

이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동일한 전공으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1~4단계)에 지원할 수 없음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1단계]

- 고등학교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고등학교 졸업학력 및 자격인정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 교육감이 학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2단계]

- 교양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0%(2과목)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
- 교양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시험 면제를 받은 과목이 60%(3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교양과정 인정시험 합격과목과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을 합하여 60%(3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대학, 교육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도 같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한한다. 이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도 같다)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외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3단계] : 전공분야별 동일전공 인정(학과)⁴⁾에 한한다.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0%(2과목)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이 60%(4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과목과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을 합하여 60%(4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외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 ➕ 유아교육학 · 정보통신학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유아교육(학)과, 정보통신(학)과 또는 동일전공 인정(학과*)에서 2년 이상 수료 또는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라. 학위취득종합시험 [4단계] : 전공분야별 동일전공 인정(학과)에 한한다.

-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합격(면제)한 자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 없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5학점(전공 16학점 이상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자

4) 전공분야별 동일전공 인정(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 등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교과과정이 학위취득시험에 설치된 전공분야의 시험과목과 그 학문적 성격이 유사한 (학)과를 동일전공으로 인정한다[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전공분야별 동일전공 인정(학과) 현황 : 별표 1 (24Page) 참조

-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 ✦ 간호학 :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 대학(간호학과)에서 3년 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 간호사 면허증만으로 응시자격이 될 수 없음(면허증 제출할 필요 없음)
 - ※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에서 제외됨
 - ✦ 유아교육학·정보통신학 : 3년제 유아교육(학)·정보통신(학) 전공자 또는 동일전공 인정(학)과를 졸업한 자,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3년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에서 제외됨)
 - ✦ 유아교육학, 간호학 전공 응시자는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 합격으로 학사학위만 수여되며 자격증(면허증)은 부여되지 않음

4. 시험 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시 험	합격자 발표
교양과정인정시험 (1단계)	'15. 2. 2(월) 10:00 ~ 2. 6(금) 17:00	3. 8(일) 09:00~14:40	4. 6(월) 10:00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2단계)	'15. 4. 20(월) 10:00 ~ 4. 24(금) 17:00	5. 24(일) 09:00~17:50	6. 22(월) 10:00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3단계)	'15. 7. 6(월) 10:00 ~ 7. 10(금) 17:00	8. 9(일) 09:00~17:50	9. 7(월) 10:00
학위취득종합시험 (4단계)	'15. 9. 24(목) 10:00 ~ 10. 2(금) 17:00	11. 1(일) 09:00~16:30	11. 30(월) 10:00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으며(창구접수 없음), 시험장소는 시험일 1주일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ile.or.kr>) '공지사항'에 공고함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합격자발표' 클릭 후 조회)

5.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가. 응시료 : 20,000원 (수험료 : 18,000원, 수수료 : 2,000원)

- 결제 방법 : 인터넷 접수 시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 ※ 인터넷 접수 과정에서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첨부하는 경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별도

나. 접수 방법

-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이하 '독학학위제 홈페이지')의 '응시원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한 후 원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접수기간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다.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 사항

- 인터넷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 × 4cm 크기의 상반신(탈모) 사진을 스캔한 JPG 형식의 파일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
- 응시자격을 확인하는 증빙서류의 경우 원서 접수 시 '인터넷 증명서 첨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 가능
- ※ 인터넷 증명서 발급 대상 학교가 아닐 경우에는 우편을 통하여 증명서 발송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시 상세 안내

- 인터넷상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응시원서의 수정(변경) 및 취소(환불)는 해당 단계의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접수가 종료된 후에는 일절 불가능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지원하지 않은 과목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이 무효 처리되니 과목 선택 시 주의하기 바람 (응시과목 수정은 접수기간에만 가능)
-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기한 내에 발송하지 않거나 응시자격 심사에서 자격미달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수험료 및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 시 각 단계에서 1개 전공만 지원가능(2개 전공 이상 지원 불가)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함

6.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가. 단계별 · 응시자격별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단 계	응시자격	제출 서류	제출 방법
교양과정 인정시험 (1단계)	○ 1단계 1과목 이상 합격(면제)한 자 ※ 2~4단계 합격(면제) 과목이 있는 자 포함	○ 제출할 서류 없음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 졸업증명서 1부	○ 등기우편으로 2, 13(금)까지 발송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1부	○ 등기우편으로 2, 13(금)까지 발송
전공기초 과정인정시험 (2단계)	○ 1단계 2과목 이상 합격 또는 1단계 합격과목과 면제과목을 합하여 3과목 이상인 자 ※ 2~4단계 합격(면제) 과목이 있는 자 포함	○ 제출할 서류 없음	
	○ 대학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성적증명서 1부 ※ 35학점 미만인 경우 - 수료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인터넷 접수과정에서 온라인 첨부 가능한 대학은 온라인상에서 첨부 ○ 온라인 첨부 불가능 대학은 등기우편으로 5, 1(금)까지 발송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제출할 서류 없음	
전공심화 과정인정 시험 (3단계) ※ 응시자격이 지망전공과 동일전공 인정(학과) 이어야 함	○ 2단계 2과목 이상 합격 또는 2단계 4과목 이상 면제 또는 2단계 합격과목과 면제과목을 합하여 4과목 이상인 자 ※ 3~4단계 합격(면제) 과목이 있는 자 포함	○ 제출할 서류 없음	
	○ 대학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 수료(졸업)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성적증명서 1부 ※ 70학점 미만인 경우 - 수료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인터넷 접수과정에서 온라인 첨부 가능한 대학은 온라인상에서 첨부 ○ 온라인 첨부 불가능 대학은 등기우편으로 7, 16(목)까지 발송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제출할 서류 없음	
학위취득 종합시험 (4단계) ※ 응시자격이 지망전공과 동일전공 인정(학과) 이어야 함	○ 1단계(5과목-필수과목 포함)와 2단계(6과목)와 3단계(6과목)를 합격(면제)한 자 ※ 4단계 합격 과목이 있는 자 포함	○ 제출할 서류 없음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3년 이상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성적증명서 1부 ※ 105학점 미만인 경우 - 수료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인터넷 접수과정에서 온라인 첨부 가능한 대학은 온라인상에서 첨부 ○ 온라인 첨부 불가능 대학은 등기우편으로 10, 8(목)까지 발송
	○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1부	○ 인터넷 접수과정에서 온라인 첨부 가능한 대학은 온라인상에서 첨부 ○ 온라인 첨부 불가능 대학은 등기우편으로 10, 8(목)까지 발송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5학점 (전공 16학점 이상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제출할 서류 없음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단,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 (학위증, 자격증 등)의 경우 원본을 대조한 후 반환할 수 있음.

-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응시원서 접수 후 단계별로 지정된 기한 내 [1단계 2. 13(금), 2단계 5. 1(금), 3단계 7. 16(목), 4단계 10. 8(목)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에 발송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수험료는 반환하지 않음 (주소는 접수완료 후 ‘서류제출용 봉투표지’를 출력하여 확인)
 - 서류 도착 확인은 등기우편 발송 4일 후(휴일 제외)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부속서류 도착 확인’을 클릭한 후 조회
 - 우편 운송과정에서의 분실로 인한 책임은 지지 않음(등기우편 영수증 별도 보관하기 바람)

나.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및 과정(과목)면제 신청자 제출 서류

- 1)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참고자료 서식1 참조,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 자료실 > 기타서식 참조),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외국어 증명서는 한글번역공증서 별도 첨부)

-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학력인정확인서 발급기관 :

한미교육위원단(미국)(☎02-3275-4011), 공자아카데미(중국)(☎02-554-2688, 02-3452-6775),
주한일본대사관 영사관(일본)(☎ 02-739-7400)

※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제출 가능

※ 외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경우, 학력확인을 위해 전 교육기관 졸업·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 제출해야 함.

(외국학력을 통한 응시자는 서류제출 전 콜센터(1600-0400)를 통해 필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2) 과정(과목)면제 신청자(대상자 : 별표2~6(p.26~31) 참조)

- 국가기술자격·면허 취득자 :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및 고졸 이상의 최종학력증명서(대학교 이상인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각 1부
- 국가(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 합격증명서(복사본 안됨) 및 고졸 이상의 최종학력증명서(대학교 이상인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각 1부
- 과목면제과정 지정교육기관 이수자 : 이수확인서(복사본 안됨) 및 고졸 이상의 최종학력증명서(대학교 이상인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각 1부

- 3) 서류 제출 방법 : 위 '가. 단계별 · 응시자격별 제출서류 및 서류 제출방법'과 동일함(지정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 불가)

다. 신체장애자 제출 서류

1) 대상자

- 시각장애 : 눈의 교정시력이 0.04 미만인 자(맹인)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인 자(약시자)
- 신체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 작성이 불가능한 지체 부자유자

- 2) 제출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1부

라. 응시자격 보류자 제출 서류

- 1) 대상자 :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취득 중에 있는 자(기준일 : 시험 시행일)

2) 제출 서류

-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절차를 밟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 '가. 단계별 · 응시자격별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과 동일하게 지정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기한 내에 발송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 못함)
- 시험 시행일 이전까지 완성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됨

7. 단계별 시험과목(과목코드) 및 시험시간표

※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 분야 전공은 폐지되었으므로 기 학적보유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단계 교양과정인정시험 : 5과목 합격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

- 필수 3과목 (1교시 : 국어, 국사, 2교시 : 외국어)
- 선택 2과목 (3교시 : 15과목 중 2과목 선택)
- 1교시 입실완료 08 : 30

교시별 / 구분	시 간	시 험 과 목 명
1교시	09:00~10:40 (100분)	국어(10001), 국사(10002)
2교시	11:10~12:00 (50분)	외국어 [영어(10003), 독일어(10004) 프랑스어(10005), 중국어(10006) 일본어(10007)] 중 택 1
(중식)	12:00~12:50 (50분)	
3교시	13:00~14:40 (100분)	[국민윤리(10101), 문학개론(10102) 철학개론(10103), 문화사(10104) 한문(10105), 법학개론(10401) 경제학개론(10402), 경영학개론(10403) 사회학개론(10404), 심리학개론(10405) 교육학개론(10406), 자연과학개론(10701) 일반수학(10702), 초급통계학(10703) 전산개론(10704)] 중 택 2

나. 2단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 6과목 이상 합격

● 1교시 입실완료 08 : 30

교시 분야	1 교 시	2 교 시	(중식)	3 교 시	4 교 시
	09:00~10:40 (100분)	11:10~12:50 (100분)	12:50 ~ 13:50 (60분)	14:00~15:40 (100분)	16:10~17:50 (100분)
국 어 국문학	국어학개론(21001) 국어문법론(21002)	국문학개론(21003) 국어사(21004)		고전소설론(21005) 한국현대시론(21006)	한국현대소설론(21007) 한국현대희곡론(21008)
영 어 영문학	영어학개론(21102) 영국문학개론(21109)	중급영어(21110) 19세기영미소설(21111)		영미희곡 I (21114) 영어음성학(21115)	영문법(21108) 19세기영미시(21113)
심리학	상담심리학(21301) 산업및조직심리학 (21302)	학교심리학(21303) 생물심리학(21304)		발달심리학(21305) 성격심리학(21306)	동기와정서(21307) 심리통계(21308)
경영학	회계원리(24001) 인적자원관리(24009)	마케팅원론(24004) 조직행동론(24014)		경영정보론(24011) 마케팅조사(24012)	생산운영관리(24015) 원가관리회계(24016)
법 학	민법 I (24101) 헌법 I (24102)	형법 I (24103) 상법 I (24104)		법철학(24105) 행정법 I (24106)	형사소송법(24108) 국제법(24109)
행정학	인사행정론(24202) 행정조직론(24209)	지방행정론(24203) 정치학개론(24204)		기획론(24205) 비교행정론(24206)	헌법(24207) 재정학(24208)
가정학	인간발달(27102) 복식디자인(27109)	영양학(27103) 가정관리론(27110)		의복재료(27105) 주거학(27106)	가정학원론(27107) 식품및조리원리(27108)
컴퓨터 과 학	논리회로설계(27202) C프로그래밍(27210)	자료구조(27203) 객체지향프로그래밍 (27212)		시스템프로그래밍(27206) 컴퓨터시스템구조(27213)	프로그래밍언어론(27207) 이산수학(27208)

- 기존 과목과 과목코드가 다르면 다른 과목으로 인정함
 - 다만 2011년에 가정학의 가정자원관리가 2단계에서 3단계로, 가정관리론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되었으나 동일과목이며,
 - 컴퓨터과학의 컴퓨터시스템구조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되었으나 동일과목이므로 중복 이수 불가 (중복이수하여도 인정이 안 됨)
- 2010년 이전에 합격한 과목은 폐지되어도 합격과목으로 인정하며, 단계별로 6과목 이상 합격하면 됨

다.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 6과목 이상 합격

● 1교시 입실완료 08 : 30

교시 분야	1 교 시	2 교 시	(중식)	3 교 시	4 교 시
	09:00~10:40 (100분)	11:10~12:50 (100분)	12:50 ~ 13:50 (60분)	14:00~15:40 (100분)	16:10~17:50 (100분)
국 어 국문학	국어음운론(31001) 한국문학사(31002)	문학비평론(31003) 국어정서법(31009)		구비문학론(31005) 국어의미론(31006)	한국한문학(31007) 고전시가론(31008)
영 어 영문학	고급영문법(31109) 미국문학개관(31110)	영어발달사(31103) 고급영어(31111)		20세기영미소설(31113) 영어통사론(31115)	20세기영미시(31114) 영미희곡 II (31116)
심리학	이상심리학(31301) 심리검사(31302)	소비자및광고심리학 (31303) 학습및기억심리학 (31304)		인지지각심리학(31305) 사회심리학(31306)	건강심리학(31307) 심리학연구방법론(31308)
경영학	재무관리론(34009) 경영전략(34010)	투자론(34004) 경영과학(34014)		재무회계(34001) 경영분석(34012)	노사관계론(34008) 소비자행동론(34013)
법 학	헌법 II (34101) 민법 II (34102)	형법 II (34103) 민사소송법(34104)		행정법 II (34106) 경제법(34109)	노동법(34107) 상법 II (34108)
행정학	재무행정론(34201) 정책학원론(34209)	조사방법론(34203) 행정법 I (34204)		지역사회개발론(34205) 행정계량분석(34206)	도시행정론(34207) 공기업론(34208)
유 아 교육학	유아교육연구및평가 (34302) 부모교육론(34307)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34304) 아동복지(34305)		유아언어교육(34306) 유아사회교육(34308)	유아수학 · 과학교육 (34309) 놀이이론과실제(34310)
가정학	가족관계(37101) 가정자원관리(37112)	식생활과건강(37103) 의복구성(37105)		육아(37106) 복식문화(37107)	주거공간디자인(37110) 식품저장및가공(37111)
컴퓨터 과 학	운영체제(37202) 인공지능(37212)	소프트웨어공학(37204) 컴퓨터네트워크(37209)		컴파일러(37203) 알고리즘(37211)	데이터베이스(37207) 컴퓨터그래픽스(37213)
정 보 통신학	회로이론(37501) 데이터통신(37502)	정보통신이론(37503) 임베디드시스템(37504)		이동통신시스템(37505) 정보통신기기(37506)	정보보안(37507) 네트워크프로그래밍 (37508)

- 기존 과목과 과목코드가 다르면 다른 과목으로 인정함
 - 다만 2011년에 가정학의 가정자원관리가 2단계에서 3단계로, 가정관리론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되었으나 동일과목이며,
 - 컴퓨터과학의 컴퓨터시스템구조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되었으나 동일과목이므로 중복 합격(이수) 불가(중복합격(이수)하여도 인정이 안 됨)
- 2010년 이전에 합격한 과목은 폐지되어도 합격과목으로 인정하며, 단계별로 6과목 이상 합격하면 됨

라. 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 : 6과목 합격(교양 2과목, 전공 4과목)

● 1교시 입실완료 08 : 30

교시 분야	1 교 시	2 교 시	(중식)	3 교 시
	09:00~11:00 (120분)	11:30~13:30 (120분)	13:30~ 14:20(50분)	14:30~16:30 (120분)
국 어 국문학	[국 어(40001) 국 사(40002)] 중 택2 ※ 외국어를 선택할 경우 [영 어(40003) 독 일 어(40004) 프 랑 스 어(40005) 중 국 어(40006) 일 본 어(40007)] 중 택1	국어학개론(41001) 국문학개론(41002)		한국문학사(41003) 문학비평론(41004)
영 어 영문학		영미문학개론(41105) 영미소설(41106)		영어학개론(41103) 고급영어(41107)
심리학		임상및상담심리학(41301) 산업조직및소비자심리학(41302)		발달및사회심리학(41303) 인지신경과학(41304)
경영학		재무관리(44001) 마케팅관리(44006)		회계학(44003) 인사조직론(44005)
법 학		민 법(44101) 헌 법(44105)		형 법(44102) 상 법(44106)
행정학		조직행태론(44205) 인사행정론(44202)		재무행정론(44203) 정책분석평가론(44206)
유 아 교육학		유아교육론(44301) 유아발달(44302)		유아교육과정(44303) 유아교육교수법(44304)
가정학		패션과의생활(47109) 소비자론(47110)		식이요법(47107) 주거관리(47108)
컴퓨터 과 학		컴퓨터시스템구조(47201) 컴퓨터네트워크(47205)		자료구조(47203) 운영체제(47204)
정 보 통신학		전자회로(47501) 정보통신시스템(47502)		네트워크및보안(47503) 멀티미디어통신(47504)
간호학	간호연구방법론(47401) 간호과정론(47402)		간호지도자론(47405) 간호윤리와법(47406)	

● 기존 과목과 과목코드가 다르면 다른 과목으로 인정함

- 즉, 경영학에서 폐지된 마케팅원론(44002)과 신설된 마케팅관리(44006) 및 가정학에서 폐지된 소비자 보호론(47106), 의생활관리(47105)와 신설된 소비자론(47110), 패션과의생활(47109)은 별개의 과목임

● 과목합격자가 폐지된 과목에 합격하였으면 나머지 과목을 합하여 전공 4과목과 교양 2과목을 합격하면 되며, 폐지된 과목에 합격한 후에 총점합격제를 선택하면 이미 합격한 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총점합격제」는 6과목을 모두 신청해야 함

※ 「과목별 합격제」를 선택할 경우 기합격 과목을 포함하여 6과목을 초과하여 선택할 수 없음(기합격 과목은 재응시 불가)

[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 결정방식 적용 방법]

- ① 「총점합격제」 또는 「과목별합격제」의 적용은 응시원서 접수 시 지원자가 선택한다.
- ② 「총점합격제」를 선택하였던 자가 「과목별합격제」로 변경하여 응시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직전 학위취득종합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한하여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 ③ 「과목별합격제」를 선택하였던 자가 「총점합격제」로 변경하여 응시한 경우에는 이미 과목 합격한 사항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④ 「총점합격제」를 선택한 자가 다시 「총점합격제」로 응시한 경우는 전년도 총점제 점수를 삭제한다.
- ⑤ 일부과목(1~5과목) 지원자는 반드시 「과목별합격제」로 지원하여야 하며 합격한 과목은 시험에 지원할 수 없다.
※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은 취소되지 않으며 합격 후 재응시할 수 없다.

8. 수험생 유의 사항

가. 준비물

- 수험표
-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흑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
- 주관식 답안 작성용 흑색(또는 청색) 볼펜(또는 만년필)

나. 입실 및 퇴실 시간

- 입실 :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 불가
 - 1교시 응시자 : 1교시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08:30)
 - 2~4교시 응시자 : 각 교시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입실

※ 1과목 응시자도 2과목 응시자와 동일하게 해당 교시 시험 시작 30분 전(1교시 응시자), 20분전(2~4교시 응시자) 까지 입실
- 퇴실
 - 시험 시작 후 40분 경과 후부터 퇴실 가능
 - 1과목 응시자는 시험 시작 후 지정된 시간(1~3단계는 50분, 4단계는 60분) 경과 시 퇴실 조치

다. 작성한 답안이 무효 처리되는 경우

- 응시원서 접수 시 지원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에 응시한 경우
- 주관식 답안지의 답란에 답을 작성하고 그 위에 ×표를 크게 표시한 경우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답안지에 안내되어 있음

라. 신체장애인의 시험 응시(별도 시험실 운영)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미만인 시각장애인 : 요청시 점자 문제지를 제공하고 시험 시간을 1.5배 이내 운영한다(중식 지참).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인 시각장애인 : 요청시 확대 문제지를 제공하고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한다(휴식시간 조정).
- 신체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지 작성이 불가능한 지체 부자유자 : 답안지 작성 시 감독관 대필이 가능하고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한다(휴식시간 조정)

마. 시험 응시 관련 유의 사항

-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에 미제출(서류미비 포함)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장소는 시험일 1주일 전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ile.or.kr>) '공지사항'에 공고하며, 지정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 수험표는 시험일 1주일 전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출력이 가능하며 수험표에 응시가능 여부 및 시험장이 기재됨 (※ 시험일 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 필수 지참)
- 답안지 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되어 있는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야 함
 - ※ 객관식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고 주관식 답안지의 답란은 흑·청색 볼펜 또는 수성펜을 사용
 - ※ 시험 응시시간에는 계산기, 법전 등은 일절 사용할 수 없음
- 문제지에도 수험번호·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퇴실할 때에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함

시험 시행 후 학력조회 등을 통하여 학점 및 합격(이수)과목 미달, 학력 미달, 동일전공 불인정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시험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될 시에는 합격된 모든 과목은 무효 처리됨.

Ⅱ 과정 · 과목 면제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과정 면제 : 자격취득분야와 동일한 전공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해당 과정별 인정시험을 면제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과정면제 일람표 : 별표2(p. 26) 참조].
- 과목 면제 : 자격취득분야와 다른 전공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과목면제 일람표 : 별표3(p. 27) 참조].

2. 교육부령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국가(지방) 공무원 7급 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 [시험 합격자 과정면제 일람표 : 별표4(p. 28~29) 참조]

3.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격 · 면허를 취득한 자

- 공인회계사
- 공인노무사
- 변리사
-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 감정평가사
- 세무사
- 법무사
- 관세사
-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준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

※ [자격 · 면허 취득자 과정면제 일람표 : 별표5(p. 30) 참조]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강좌 또는 과정을 이수한 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평가영역을 충족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는 해당시험과목을 면제한다 [과목면제과정 지정교육기관 일람표 : 별표6(p. 31) 참조].

Ⅲ 출제 및 성적 평정

1. 출제 방향

가. 교양과정인정시험(1단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고시한 과목별 평가영역에 준거하여 출제하되 특정한 영역이나 분야가 지나치게 중시되거나 경시되지 않도록 한다.
- 대학 교양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출제하되, 교양과정 범위를 넘는 전문적이거나 지엽적인 내용의 출제는 지양한다.
- 독학자들의 취업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과목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문항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문항도 출제한다.
- 단편적 지식의 암기로 풀 수 있는 문항의 출제는 지양하고, 이해력·적용력·분석력 등 폭넓고 고차원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위주로 한다.
- 이설(異說)이 많은 내용의 출제는 지양하고 보편적이고 정설화된 내용에 근거하여 출제하며,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자의 성명이나 학파를 명시한다.
- 객관식 문항은 4지택1형으로 하며, 주관식 문항은 단답형 또는 30자 내외의 서술형이 되도록 한다.
- 문항당 답안 작성 소요시간은 객관식은 1분(일반수학, 초급통계학 1.5분), 주관식은 2.5분(일반수학, 초급통계학은 4분) 정도가 되도록 한다.

나. 전공과정인정시험(2~4단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고시한 과목별 평가영역에서 출제하되, 특정한 영역이 지나치게 중시되거나 경시되지 않도록 한다.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은 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은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 학위취득종합시험은 시험의 최종단계로서 학위를 취득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객관식 문항은 4지택1형으로 하고, 주관식 문항은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서는 단답형 또는 30자 내외의

서술형,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과 학위취득종합시험에서는 80자 내외의 서술형으로 하되, 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소 융통성 있게 출제한다.

2. 문항 수 및 배점

단 계	문항 수 및 배점			예외 과목		
	객관식	주관식	합계	객관식	주관식	합계
1·2단계	26문항×2.5점 = 65점	7문항×5점 = 35점	33문항 100점	16문항×4점 = 64점	6문항×6점 = 36점	22문항 100점
3·4단계	24문항×2.5점 = 60점	4문항×10점 = 40점	28문항 100점	15문항×4점 = 60점	5문항×8점 = 40점	20문항 100점

※ ‘문항 수 및 배점’은 ‘예외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적용됨

※ ‘예외과목’은 아래의 과목이 해당됨

- 1단계 ‘일반수학’, ‘초급통계학’
- 2단계 ‘이산수학(컴퓨터과학 분야)’
- 3단계 ‘경영과학(경영학 분야)’
- 2·3·4단계 수학 전공 분야의 모든 과목

3. 시험범위

- 시험의 범위 및 예시문항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ile.or.kr>)학습정보 - 시험과목별 평가영역에서 확인 가능.

4. 합격 사정

가. 1~3단계 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합격을 인정한다(합격 여부만 결정).

나. 4단계 시험

- 총점합격제에 지원한 자 : 6과목 총점(600점)의 60%(3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과목낙제 없음).
- 과목별합격제에 지원한 자 : 매 과목 100점 만점의 60%(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과목합격 인정).

※ 자세한 내용은 15~16Page 참조

5. 성적 평정

가. 1~3단계 시험 결과는 합격 여부만 결정

나. 학위취득자의 시험성적 평정은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의 성적만으로 하며, 전공별로 취득한 성적의 분포 비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등급과 평점을 부여함.

등급	A+	A0	A-	B+	B0	B-	C+	C0	C-	D+	D0	D-
성적분포 비율(%)	0.01 ~ 3.00	3.01 ~ 7.00	7.01 ~ 13.00	13.01 ~ 22.00	22.01 ~ 35.00	35.01 ~ 50.00	50.01 ~ 65.00	65.01 ~ 78.00	78.01 ~ 87.00	87.01 ~ 93.00	93.01 ~ 97.00	97.01 ~ 100.0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100점기준 환산점수	100	96	93	89	86	83	79	76	73	69	66	63

※ 성적평정 대상자가 10명 미만의 전공일 경우, 대상자의 평균점수를 내어 취득점수가 평균점수 이상인 자는 B-, 미만인 자는 C+로 하되, 평균점수보다 10점 이상인 자는 A-, 미만인 자는 C-로 하고, 13점 이상인 자는 A0, 16점 이상인 자는 A+로 한다.

다. 학위취득종합시험 최종 합격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 외에는 취소되지 않음.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6. 합격자 발표

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ile.or.kr>) ⇒ ‘합격자발표’ 클릭 후 조회

나. 성적증명서는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인터넷 증명발급’ 클릭 후 인터넷 증명서 발급 대행업체에서 회원가입하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 학위취득종합시험에 최종 합격한 경우 학위증명서는 학위수여식 날부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다. 유아교육학(3단계부터 있음), 간호학(4단계에만 있음) 응시자는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 합격으로 학사학위만 수여되며 자격증(면허증)은 부여되지 않음

라. 학점인정

독학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하거나, 과목면제과정 지정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은 학점은행제(<http://www.cb.or.kr> ☎1600-0400)를 통해 학점인정 절차를 거쳐야 학점인정이 가능함.

IV 기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학적 부여

- 부여 대상 : 각 과정별 시험에서 최초로 1과목 이상 합격하였거나 면제를 인정받은 자
- 자격 유효 : 학적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독학과정자'라 하며 이 학적번호는 영구 유효함

2. 증명서 발급

가. 발급유형

- 국문 : 학위수여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4단계 합격자에 한함), 성적증명서
- 영문 : 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나. 발급방법

- 인터넷 발급 :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ile.or.kr>)에서 “인터넷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여 증명서 발급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해당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절차에 따라 증명서 개별 출력
- 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제출(방문, 우편)
 - ※ 우편발송 신청 :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증명서발급-발급방법 등 참조

다. 수수료 : 국문(한글)증명서 300원, 영문증명서 600원(1부당)

3. 「학위취득종합시험 응시사실확인서」 발급

가. 발급 대상 :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 발표 전에 상급학교 진학 등에 증명을 필요로 하는 자

※ 대학원 입학 전형자료로 사용할 경우 지원 대학원의 입시요강(선발기준)에 따라 전형 제출서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나. 발급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V 참고 자료

별표 1 전공분야별 동일전공 인정(학)과 현황

별표 2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과정면제 일람표

별표 3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과목면제 일람표

별표 4 시험 합격자 과정면제 일람표

별표 5 자격·면허 취득자 과정면제 일람표

별표 6 과목면제과정 지정교육기관 일람표

서식 1 학력인정확인서

별표 1 전공분야별 동일전공 인정(학)과 현황

2015. 1. 1 기준

전공분야	동 일 전 공 인 정 학 과
국어국문학	국어, 국어교육, 극작과, 디지털스토리텔링, 문예창작, 미디어문예창작, 영상문예, 한국어문학
영어영문학	관광영어, 관광영어통역, 관광통역, 관광통역영어, 국제문화, 국제문화영미문화, 미디어영어, 선교영어, 실무영어, 실용영어, 영미문예, 영어, 영어교육, 영어통역, 영어통번역, 외국어교육, 외국어교육영어, TESOL영어
심 리 학	가족상담학과, 교육심리학과, 산업광고심리학과, 산업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경 영 학	경영경제, 경영공학, 경영과학, 경영산업공학, 경영정보, 경영정보시스템, 공업경영, 관광경영, 관광경영정보, 관세, 국제경영, 국제통상, 국제통상정보, 금융, 금융보험, 금융보험정보, 기업경영, 기업국제경영, 내국세, 농업경영, 디지털경영, 마케팅정보, 무역, 무역사무자동화, 무역실무, 물류관리, 보험경영, 보험실무, 부동산, 부동산경영, 비즈니스경영, 산림경영, 산업경영, 산업기술경영, 산업시스템경영, 산업및시스템경영, 산업시스템공학경영, 산업및시스템공학경영, 산업정보시스템경영, 상, 산업교육, 세무, 세무정보, 세무행정, 세무회계, 세무회계정보, 수산경영, 유통경영, 유통정보, 인터넷무역, 인터넷비즈니스, 인터넷비즈니스정보, e비즈니스, 재무금융,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증권경영, 증권금융, 창업경영, 철도경영, 철도경영정보, 철도운수경영, 철도운수경영정보, 축산경영, 테크노경영, 텔레마케팅, 항공경영, 해양산업경영, 해운경영, 협동조합경영, 호텔경영, 호텔관광, 호텔관광경영, 회계, 회계금융, 회계정보
법 학	공법, 국제법무, 법률, 법률경찰, 법률실무, 법무행정, 사법, 해사법
행 정 학	경찰행정, 관광행정, 교정행정, 도시행정, 법률행정, 법무행정, 보건행정, 비서행정, 산업행정, 의무행정, 자치행정, 정치행정, 지방행정, 지역개발, 지역계획, 지역사회개발, 체육행정, 토지행정, 행정전산
유아교육학	가정복지, 가정복지보육, 가족복지, 보육, 불교아동, 사범대학교육(학령전교육전공), 생활보육, 아동, 아동·가정환경학, 아동가족, 아동교육상담, 아동놀이지도, 아동문화, 아동미술, 아동미술디자인, 아동보육, 아동보육복지, 아동복지, 아동복지보육, 아동복지상담, 아동생활보육, 아동음악, 여성교양, 유아복지, 유아아동복지, 유아특수교육, 유아특수언어재활과, 유아특수재활, 초등교육
가 정 학	가정관리, 가정교육, 가족경영소비자학, 가족가정복지학, 가족복지학, 가족주거학, 건강식품가공, 농가정, 농업가정, 니트패션디자인, 니트패션코디네이션디자인, 다이어트정보, 디자인, 복식, 섬유공예디자인, 섬유, 섬유공학, 섬유디자인, 생활과학, 생활교양, 소비자아동, 식생활, 식품가공, 식품과학, 식품공업, 식품공학, 식품생명과학, 식품영양, 식품조리, 여성교양, 염색가공, 영양, 영양식품, 의류, 의류직물, 의상, 의상디자인, 의생활, 전통복식, 전통의상, 전통조리, 조리, 주생활, 컴퓨터니트섬유, 텍스타일, 패션디자인, 패션스타일리스트, 패션코디네이션디자인, 푸드스타일리스트, 호텔외식조리, 호텔조리
컴퓨터과학	경영정보, 경영정보학, 게임웨어, 게임프로그래밍학, 네트워크, 네트워크정보관리, 디지털방송미디어, 디지털정보, 마이크로소프트IT,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정보,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모바일인터넷, 모바일인터넷관련, 모바일컨텐츠, 미디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반도체전자, 사무자동화, 산업정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개발, 소프트웨어유비쿼터스응용정보, 소프트웨어정보, 웨데이터베이스, 웹컴퓨터, 웹컴퓨터소프트웨어, 웹프로그래밍, 유비쿼터스프로그래밍, 인터넷, 인터넷관련, 인터넷보안, 인터넷상거래, 인터넷소프트웨어공학, 인터넷정보, 인터넷정보보안, 인터넷컴퓨팅, 임베디드소프트웨어시스템, 임베디드시스템, 전기전자및전기공학, 전산, 전산과학, 전산공학, 전산기공학, 전산사무자동화, 전산사무전자정보, 전산사무정보, 전산전자공학, 전산정보, 전산정보검색통계, 전산정보처리, 전산통계, 전자계산공학,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공학, 전자계산학, 전자공학, 전자전산공학, 전자전산기공학, 전자상거래, 전자통신, 정보과학, 정보관리, 정보공학, 정보미디어, 정보보안해킹관리, 정보보호, 정보시스템개발, 정보처리, 정보처리응용, 정보통신, 정보통신공학,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시스템, 정보통신전자공학, 컴퓨터, 컴퓨터게임정보, 컴퓨터공학, 컴퓨터교육, 컴퓨터교육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소프트웨어, 컴퓨터시스템, 컴퓨터응용, 컴퓨터정보, 컴퓨터정보기술, 컴퓨터정보처리, 행정전산
정보통신학	디스플레이전자, 디지털통신, IT보안, 유비쿼터스설비제어, 인터넷정보, 임베디드시스템, 전기공학, 전기전자전파공학, 전기전자통신 공학, 전자, 전자공학, 전자기기, 전자정보, 전자정보통신, 전자통신, 정보보호, 정보전자, 정보통신공학,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전자공학, 전파공학, 제어계측공학, 컴퓨터공학, 컴퓨터과학,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전자

※ 동일전공 인정학과 관련 다음 페이지 유의사항 필독

+ 동일전공 인정학과 관련 유의사항

- 인정학과는 학력이 인정된 고등교육기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를 포함)에 공통으로 적용함
- 학과 명칭에는 [(학)과], [과], [(학)전공]간의 구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적용함
- 전공분야와 동일 명칭 학과는 생략함
- 동일전공 인정학과로 등재되지 않은 전공은 전공명이 비슷해도 동일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음
 - ※ 학과 명칭이 비슷하여 동일전공이 된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서류심사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출신학과 또는 전공에 대한 동일전공 인정심의를 받고자 할 경우 동일전공 인정 심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 [출신학과 교수요목(교과과정표)과 성적증명서 각 1부]를 구비하여 일괄신청 기간 또는 각 단계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동일전공 인정 심의 신청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 자료실 → 기타 서식'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일괄신청 기간과 각 단계 신청기간 중 택하여 해당 기간에 신청
 - 일괄신청 기간 : 2월 한 달간 (동일전공 인정여부를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각 단계 신청 기간 : 1단계를 제외한 각 단계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10일 전까지 신청 (일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 / 우편 / 팩스 / 인터넷 신청
 - 팩스번호 : 02-2070-3148
 - 우편신청 주소 : 우)150-87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 4층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사관리실
 - 인터넷 :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ile.or.kr>) 로그인 후 상담페이지 게재

별표 2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과정면제 일람표

가. 컴퓨터과학 분야를 지원할 경우에 한함

1999. 3. 27 이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1999. 3. 28 이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자격 종 별	교양과정 (1단계)	컴퓨터과학		자격 종 별	교양과정 (1단계)	컴퓨터과학	
		2단계	3단계			2단계	3단계
전자계산기기술사	○	○	○	전자계산기기술사	○	○	○
전자계산기기사급	○	○	○	전자계산기기사	○	○	○
전자계산기기사2급	○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	
전자계산기기능사급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	○	○	정보관리기술사	○	○	○
정보처리기사급	○	○	○	정보처리기사	○	○	○
정보처리기사2급	○	○		정보처리산업기사	○	○	
정보처리기능사급	○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	○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급	○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2급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	
				정보기술산업기사	※ 단, 2단계 개설 과목 중 '자료구조'는 제외		

※ 단, '정보기술산업기사' 자격소지자는 전공기초과정(2단계) 개설 과목 중 '자료구조' 과목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과정이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료구조' 과목을 이수(합격 또는 면제)하여야 함

나. 정보통신학 분야를 지원할 경우에 한함

1999. 3. 27 이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1999. 3. 28 이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자격 종 별	교양과정 (1단계)	정보통신학		자격 종 별	교양과정 (1단계)	정보통신학	
		2단계	3단계			2단계	3단계
정보통신기술사	○	○	○	정보통신기술사	○	○	○
유선설비기사급	○	○	○	정보통신기사	○	○	○
정보통신설비기사1급	○	○	○	정보통신산업기사	○	○	
정보통신설비기사2급	○	○		무선설비기사	○	○	○
무선설비기사급	○	○	○	무선설비산업기사	○	○	
무선통신기사				전파전자기사	○	○	○
무선설비기사2급	○	○		전파전자통신기사	○	○	○
무선통신산업기사	○	○		통신선로산업기사	○	○	
전파통신기사급	○	○	○	방송통신기사	○	○	○
전파통신기사	○	○	○	방송통신산업기사	○	○	
전파전자기사급	○	○	○	통신설비기능장	○	○	
전파전자기사	○	○	○	유선설비기능장	○	○	
유선설비기사2급	○	○		정보보안산업기사	○	○	
유선설비기능장	○	○		정보보안기사	○	○	○
유선설비기능장	○	○					

별표 3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과목면제 일람표

1999.3.27 이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1999.3.28 이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자격종별	교양과정 (1단계)	기초과정 (2단계)	심화과정 (3단계)	자격종별	교양과정 (1단계)	기초과정 (2단계)	심화과정 (3단계)
전자계산기기능사 1급	전산개론	×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산개론	×	×
전자계산기기사 2급	전산개론	×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사 1급	전산개론	×	×	전자계산기기사	전산개론	×	×
				전자계산기기술사	전산개론	×	×
정보처리기능사 1급	전산개론 초급통계학	×	×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산개론	×	×
정보처리기사 2급	전산개론 초급통계학	×	×				
정보처리기사 1급	전산개론 초급통계학	×	×	정보처리기사	전산개론	×	×
				정보관리기술사	전산개론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2급	전산개론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전산개론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급	전산개론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산개론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전산개론	×	×
전산응용기계기사 2급(가공)	전산개론	×	×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전산개론	×	×
전산응용기계기사 2급(설계)	전산개론	×	×	기계설계산업기사	전산개론	×	×
계측제어기사 2급	×	논리회로설계	×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	논리회로설계	×
계측제어기사 1급	×	논리회로설계	×	공업계측제어기사	×	논리회로설계	×
				공업계측제어기술사	×	논리회로설계	×
전자기기기능사 1급	×	논리회로설계	×	전자산업기사	×	논리회로설계	×
공업전자기기기능사 1급	×	논리회로 설계자료구조	×				
전자기사 2급	×	논리회로설계	×	전자기사	×	논리회로설계	×
전자기사 1급	×	논리회로설계	×	전자기기기능장	×	논리회로설계	×
전자기기기능장	×	논리회로설계	×	제과기능장	×	식품및조리원리	×
				조리기능장	×	식품및조리원리	×
				식품산업기사	×	식품및조리원리	×
				식품기사	×	식품및조리원리	×
				식품기술사	×	식품및조리원리	×
양복기능사 1급	×	×	의복구성	양복산업기사	×	×	의복구성
한복기능사 1급	×	×	의복구성	한복산업기사	×	×	의복구성
양장기능사 1급	×	×	의복구성	패션디자인산업기사	×	×	의복구성
의류기사 1·2급	×	의복재료	의복구성	의류기사	×	의복재료	의복구성
				의류기술사	×	의복재료	의복구성
				건축산업기사	×	×	주거공간 디자인
				건축기사	×	×	주거공간 디자인
				실내건축산업기사	×	×	주거공간 디자인
				실내건축기사	×	×	주거공간 디자인

※ 2003년 이후 지원자는 '주거공간디자인' 과목만 면제가 가능하며 '주거학' 과목을 기면제 받은 경우 '주거공간디자인' 과목을 면제받을 수 없다.

별표 6 과목면제과정 지정교육기관 일람표

- 개강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사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기준일 : 2015. 1. 1)

면제과정 교육기관	면 제 과 목 (총 과목수)			최 초 지정일자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02)765-1847	국 어 국 사 영 어 문 학 개 론 경 영 학 개 론 교 육 학 개 론 전 산 개 론	국 어 국 문 학(6) 영 어 영 문 학(7) 경 영 학(6) 법 학(6) 가 정 학(6)	국 어 국 문 학(6) 영 어 영 문 학(7) 경 영 학(6) 법 학(6) 가 정 학(6) 유 아 교 육 학(6)	'91. 9. 7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02)3475-2139	국 어 국 사 영 어 문 학 개 론 교 육 학 개 론	국 어 국 문 학(6) 영 어 영 문 학(7) 가 정 학(6)	국 어 국 문 학(6) 영 어 영 문 학(6) 가 정 학(6)	'11. 4. 29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02)2260-8996	국 어 국 사 영 어 법 학 개 론 사 회 학 개 론 교 육 학 개 론 경 영 학 개 론 문 학 개 론 전 산 개 론	국 어 국 문 학(6) 영 어 영 문 학(7) 법 학(6) 컴 퓨 터 과 학(6)	국 어 국 문 학(6) 영 어 영 문 학(6) 법 학(6) 컴 퓨 터 과 학(6)	'13. 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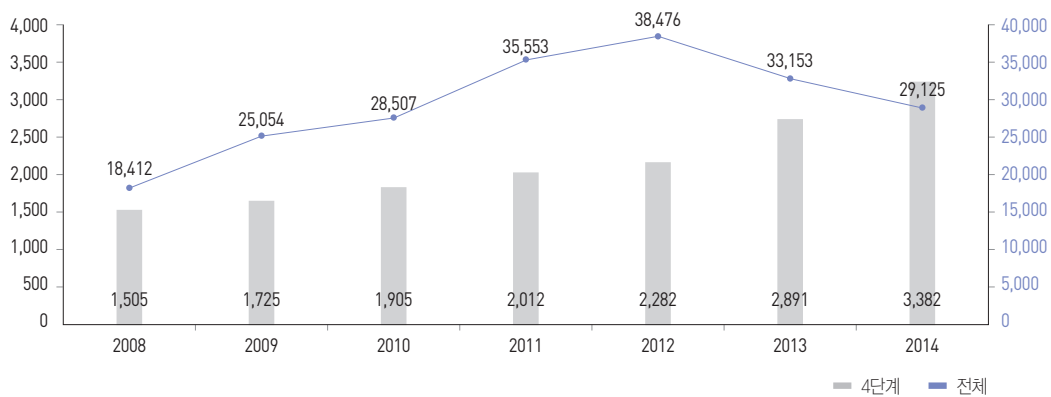
독학학위 이모저모

시험단계별 합격률 현황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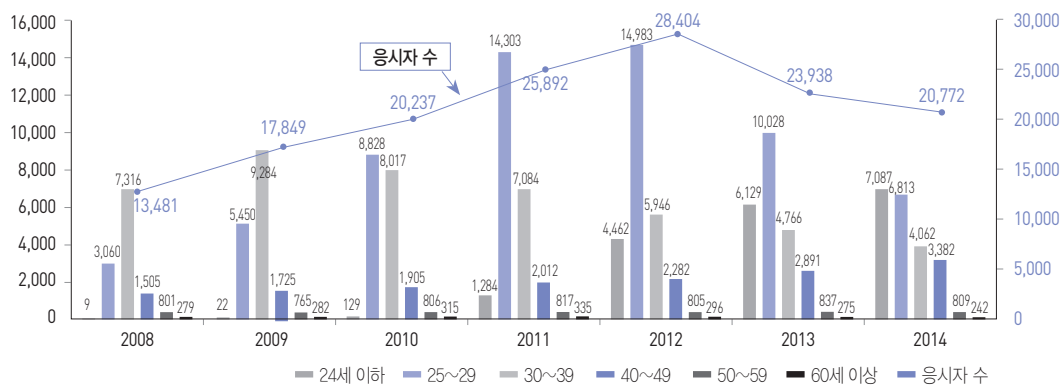
구분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1단계	13,335	9,126	6,680	73.2
2단계	8,868	6,401	4,643	72.5
3단계	3,540	2,558	2,051	80.2
4단계	3,382	2,687	1,360	50.6
계	29,125	20,772	14,734	70.9

* 1~3단계 합격률은 1과목 이상 합격자 비율이며, 4단계 합격률은 종합시험 전과목 합격자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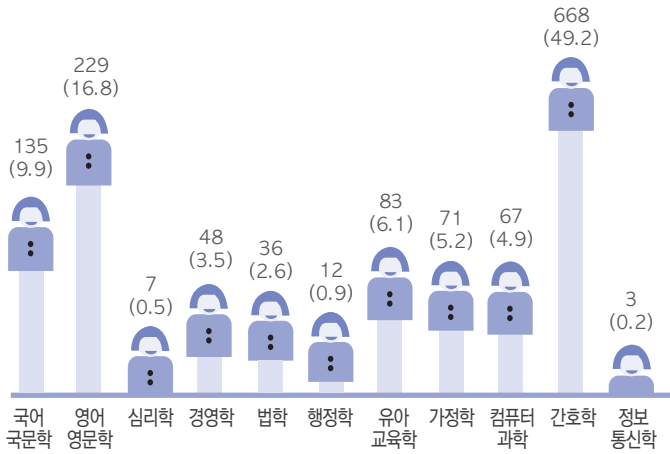
연도별 지원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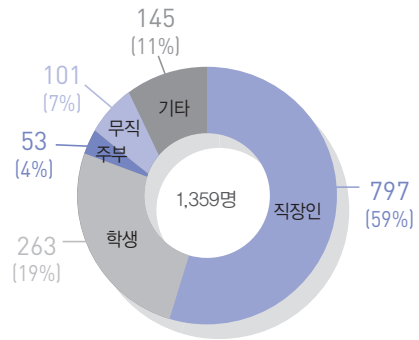
연도별 응시자 수와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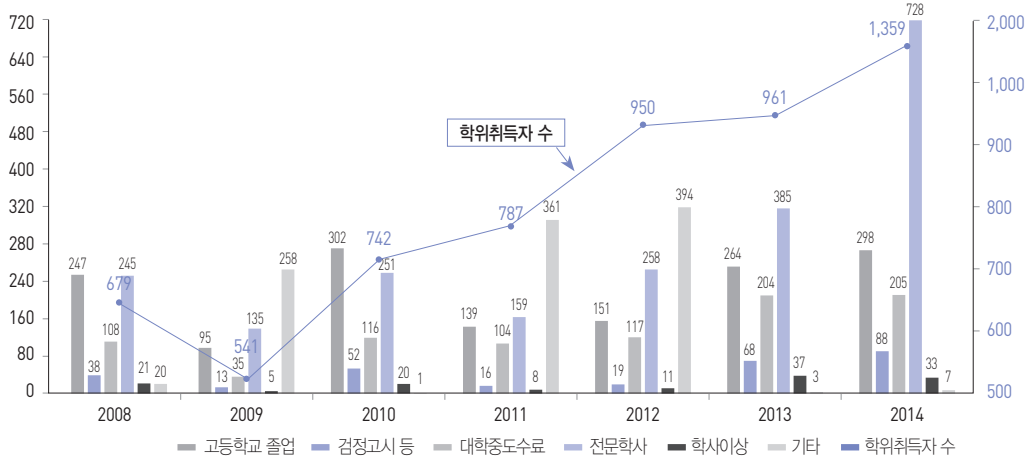
🌿 전공별 학위취득자 현황 (2015. 2 학위취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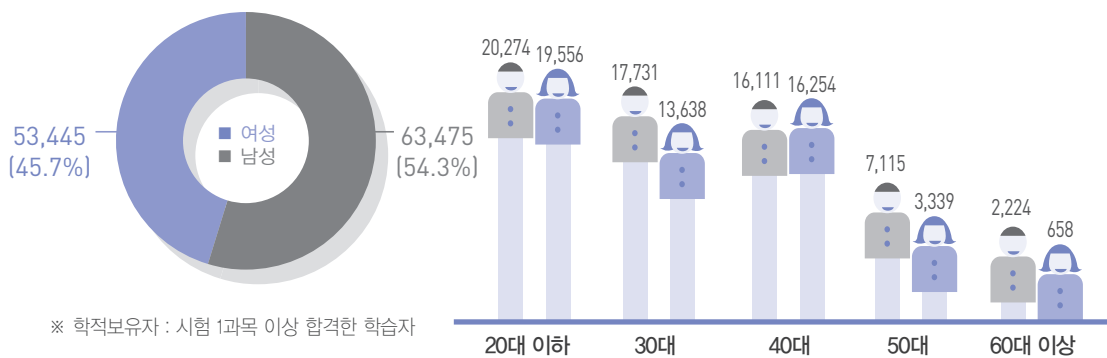
🌿 학위취득자 직업별 분포 (2015. 2 학위취득자)



🌿 연도별 학위취득자 수와 학력 분포



🌿 독학학위제 학적보유자 116,920명 (2014. 12 기준)





독학학위제 FAQ

01 독학학위제로 학사학위를 받게 되면, 학사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이 가능할까요?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에서 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의 법률적 효력은 4년제 대학교의 학사학위와 동일합니다. 제도시행 이래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독학학위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입학세부기준은 대학(원)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대학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독학학위제로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를 하면 학점이 인정되나요?

독학학위제는 1~4단계의 시험을 통해 합격자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반대학 처럼 학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학학위제시험 합격 과목에 대하여 과목당 학점으로 변환(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학점인정의 기준, 기 이수과목과의 과목 중복여부, 방법, 절차 등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www.cb.or.kr) 또는 콜센터(1600-04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독학학위제로 사법시험·CPA시험을 위해 일부학점을 취득할 수 있나요?

사법시험이나 CPA시험을 위해 독학학위제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각 단계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만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합격 후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과목을 자격시험 주관기관에서 인정하는지는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기타 독학학위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il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학학위제는 자아실현의 길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학사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하면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nile.or.kr

독학학위제 <http://bdes.nile.or.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 4층 독학사관리실 (서초동 1365-23)

T 1600-0400 F 02-2070-3148 운영시간: 평일(월~금) 09:00~18:00